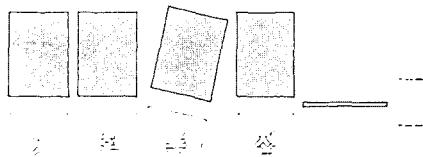


## 1. 준비회의의 경과

지난 3월2일부터 4월3일까지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의 마지막 준비회의인 제4차 준비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으로 담보되어 왔던 地球憲章이 “環境과 開發에 관한 리오宣言”으로 극적으로 채택되어서 리오 본 회의의 전망을 일단 맑게 하였다. 여하튼 이로써 브라질의 본 회의에 앞선 모든 준비회의가 종료되었고 그후 4월 들어서서 東京에서 선진국의 賢人會議와 쿠와라룸푸르의 開途國閣僚會議가 개최되었다.

개도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北京宣言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논리에 입각하고 있다. 즉, 오늘날의 지구환경문제에 대하여 선진국이 “主된 責任” (main responsibility)이 있으며 따라서 선진국들은 개도국에 대하여 “새로운, 추가적인, 그리고 적절한 재정지원” (new, additional and adequate financial assistance)을 할 것과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을 비상업적으로 그리고 양허적으로 이전” (transfer of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y by non-commercial and concessional term)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산업혁명 이후의 탄산가스의 방출이라는 역사적 책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 유엔 환경개발회의에 대한 전망

## 2. 先進國과 開途國의 기본 견해

유엔환경개발회의는 1990년 8월에 나이로비에서 열린 1차 준비회의와 1991년 3월에 제네바에서 열린 2차 준비회의를 거쳐서 대개의 윤곽이 잡혀갔다. 그리고, 1991년 6월에 北京에서 제1차 開途國閣僚會議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서 선진국을 규탄하는 강경한 선언이 채택되어 이후의 개도국의 기본적 입장으로 확립되었다. 그리고 1991년 8월에 제네바에서 열린 3차 준비회의에서는 이미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각 분야 별로 제출되어서 상당히 진전된 텍스트가 제출되었다.

임을 선진국이 지고 있으므로 热帶雨林의 보호 등의 댓가로 선진국은 응당의 보상을 경제원조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선진국은 오늘날의 지구 환경위기에 대하여 선진국들이 일단 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음을 인정하지만 많은 개도국에서의 貧困과 生態破壞는 개도국에서의 人口爆發과 國家管理失敗에 보다 큰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과거부터 선진국들은 많은 경제원조를 하였지만 부패하고 비민주적인 개도국의 정부의 무능으로 이러한 지원은 국민의 복지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주장, 개도국이 民主的인 法과 機構를 갖추고 市民參與制度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개도국의 財政支援要求에 대하여 선진국들은 기존의 개발원조(ODA)와 세계은행의 地球環境基金(GEF)을 확대하면 되며 별도의 기금은 필요치 않다고 본다. 技術移轉에 대하여도 선진국은 시장경제와 知的所有權의 기본적인 테두리안에서의 기술협조를 강조하고 있으며 민간 소유의 기술에 대하여 국가는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고, 특히 知的所有權을 보호하지 않으면 환경적으로 전전한 기술의 발전 그 자체를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의 대립은 4차 준비회의에 美國과 歐洲共同體, 그리고 파키스탄이 대표한 개도국(G-77)이 작성하여 제출한 地球憲章의 초안에 잘 나타나 있다. 리오宣言은 이같은 대립된 견해가 타협을 이룬 것이다.

### 3. “環境과 開發에 관한 리오宣言”

美國과 歐洲共同體가 각각 마련한 地球憲章의 초안은 지구환경에 대한 공통된 그러나 각기 정도가 다른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汚染者負擔의 原則, 환경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민주적 법과 절차의 중요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開途國案은 선진국의 主된 責任과 선진국에서의 비지속적인 생산과 소비행위의 규탄과 開發主權, 그리고 개도국에 대한 財政支援과 無償의 技術移轉을 담고 있었다. 극심한 대립 끝에 선진국은 민주적 법과 절차 조항을 양보하고 개도국은 주된 책임이론을 양보하였으며 대부분의 조항에서 표현을 절충

하였다. 그러나, 개도국이 기피하였던 汚染者負擔의 원칙, 環境影響評價, 국민의 環境關聯情報提供請求權 등 지속 가능한 개발의 원칙의 세부강령이 채택된 것은 선진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일 뿐더러 1972년의 스토훌름 선언 보다 발전된 개발과 환경 보호의 통합이론이 채택된 것이기도 하다. 이에 비하여 개도국 관심사항은 선진국의 환경기준이 개도국에는 지나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 할 수 있다는 등 환경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자기패배적인 조항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선진국 수준의 환경관리를 지향할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개도국 조항에는 관심을 둘 필요도 없으며 리오宣言에 천명된 汚染者負擔의 원칙 등 여러 환경관리 원칙을 보다 충실히 발전시키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4. Agenda 21

흔히 “21세기 강령”으로 해석하는 Agenda 21에는 여러가지 의제가 망라되어 있는데 이를 그룹별로 보면 우선 森林保護, 土地資源, 砂漠化, 生物多樣性 및 生物工學 등의 자연자원관리 분야의 의제와, 大氣環境, 淡水資源, 海洋環境 및 각종 폐기물의 관리와 같은 환경관리의 의제가 있으며 또한, 財政支援, 技術移轉 및 國際 機構와 制度와 같은 공통의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첨예한 대립을 보인 것은 財政支援과 技術移轉인데 재정지원에 대하여는 선진국들은 새로운 기금의 설치에는 강경히 반대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기존의 ODA와 GEF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선에서 타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지원의 규모와 결부된 것은 삼림보호의 제인데 이러한 면이 바로 브라질과 말레이지아 같은 삼림보유국가가 삼림보존을 담보로 선진국의 양보를 얻어 내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한편, 개도국이 주장한 기술의 비상업적 이전이란 市場經濟의 원칙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구호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개도국이 선진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보다 많이 얻어 내기 위한 協商道具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다. 여하튼 이 문제는 4차 회의에서는 선진국의 特許權이 만료된 기술과 公有技術(technology in the public domain)에 개도국이 접근하도록 하고 민간 소유의 기술에 관하여는 개도국으로 이전 될 수 있

도록 선진국이 각종 유인책을 사용하기로 하고 다만 상업적으로 민간기술을 구매하여 개도국에게 비상업적으로 이전하는 방법에 합의를 보았다. 사실 기술에 관하여는 후진개도국들은 이를 사용할 만한 위치도 못되는 형편이며 단지 우리나라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清淨技術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이 우리에게 어떠한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가는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특허권이 만료한 기술이란 이미 기술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며 公有技術도 이미 자유로운 접근에 공개된 것이라서 기술의 이전이라기 보다는 기술의 傳播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민간분야의 상업적 구매에 의한 비상업적 이전도 결국에도 개도국에 대한 해당지원의 형태를 벗어 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외의 의제에 관하여는 큰 대립없이 타결되었는데 大氣保護는 해당협약의 참여와 준수를 촉구하고, 有害廢棄物과 有毒化學物質의 국제 이동에 관하여는 바젤협약과 런던 指針의 참여를 촉구하고 담수자원의 권리에 대하여는 더블린회의의 결과를 수용하였다. 해양환경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일본과 우리나라가 반대하여서 공해상의 원양어업문제는 의제에서 삭제하고 별도의 회의에서 다루기로 하였다.

## 5. 우리나라의 位相

유엔환경개발회의는 이제 선진국과 개도국의 책임논쟁과 돈 싸움이 되어 버린지 오래다. 개도국중에서도 사정이 가장 절박한 사막화의 위기에 처한 아프리카 국가들과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잡길 우려가 있는 도서국가들은 실로 특별한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유엔의 다자 외교의 개도국 그룹인 G-77의 리더인 인도와 파키스탄의 빈곤과 환경문제는 이들 국가의 인구폭발과 국가관리실패가 초래한 것이다. 1960년의 우리나라의 1인당 GNP가 100불 수준일 당시에는 인도와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은 유사하였으며 필리핀과 스리랑카는 우리보다 더 부유한 나라들이었으나 이들 나라들이 과거 30년동안 무엇을 하였나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지구환경을 이유로 선진국으로부터 원조

를 얻을 절호의 기회를 포착한데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평가라 하겠다. 다만 热帶森林을 갖고 있는 국가들에 대하여는 삼림보호의 보상으로 外債의 탕감을 요구하는 등의 선진국이 외면 할 수 없는 확실한 협상도구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한다면 미국 등 선진국도 응당의 지원을 하는 것이 개도국의 생태계파괴를 자연시킬 수는 있겠으나 개도국 자체의 국가관리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원조가 결코 개도국의 환경을 향상 시키지도 않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지구의 환경을 구하지도 못 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유엔에 의한 環境信託統治라는

66

환경기금의 출연부담을 가급적 줄이고 반드시 지원을 할 경우에는 우리의 기업의 진출이 예상되는 국가에 ODA를 운영하는 등의 국익에 이바지하는 장기적 전략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77

논의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의 관심사는 과연 유엔환경개발회의 체제에 의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대처하여 나아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한가지 분명한 점은 탄산가스의 放出規制가 결국에는 국제적 의무로서 언젠가는 닥쳐올 것이라는 점이고 따라서 경제와 산업구조를 개편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현재 1인당 GNP가 6000불을 상회하여 아일란드와 풀튜갈에 근접하여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수년 후부터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기금의 출연부담을 가급적 줄이고 반드시 지원을 할 경우에는 우리의 기업의 진출이 예상되는 국가에 ODA를 운영하는 등의 국익에 이바지하는 장기적 전략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의 國際環境協約 체제는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한 마지막의 關門인바 전 국민의 새로운 각오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